

청주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규정

제정 2015. 6. 12. 규칙 제1380호
1차 개정 2020. 5. 11. 규칙 제1521호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, 우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5.11.>

② 센터의 업무추진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조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학생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5.11.>

제3조 (기능) 센터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 통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① 다문화교육에 대한 제반 연구 수행 및 지원
- ② 다문화 관련 각종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③ 다문화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지원
- ④ 기타 위와 관련한 사항

제4조 (위원회) 센터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 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전담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전담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생처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0.5.11.>

② 전담교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.

③ 간사는 센터의 업무 담당자로 하며 회의록 작성, 행정사항 집행, 회의 내용 보고 등을 한다.

제6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각종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센터 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 (회의)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<2015. 6. 12. 규칙 제1380호>

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5. 11. 규칙 제1521호)

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